

농림부고시 제 1999-82호

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.

1999. 12.

농림부장관

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

제23조·제25조, 동법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 23·제24조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(임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다. 이하 제 5조를 제외하고 같다)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원산지표시 대상품목) 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별도와 같다.

제3조(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등) ①시행규칙 제 2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의 위치, 글자크기, 색도 등은 다음과 같다.

1. 포장판매 하는 경우

가. 위치 :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.

나. 글자크기

(1) 포장 표면적 50cm²이상 : 12 point(18급) 이상

(2) 포장 표면적 50cm²미만 : 8 point(12급) 이상

다. 색도 :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.

라. 기타

(1)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하되 스티커,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.

(2)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,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.

2. 산물거래와 포장된 농산물 중 부득이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티커, 용기표면, 풋말, 안내표시판 등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.

가. 스티커(현품) : 가로 3cm×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.5cm 이상

나. 용기 표시 : 가로 10cm×세로 5cm 이상

다. 풋말 표시 : 가로 10cm×세로 5cm×높이 5cm 이상

라. 안내표시판

(1) 진열대 : 가로 7cm×세로 5cm

(2) 판매장소 : 가로 15cm×세로 10cm 이상

②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농산물(수입가공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통관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.

제4(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) ① 시행규치 제 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위치, 글자크기, 색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포장된 가공품

가. 위치 :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의한 “성분(원재료) 및 함량”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. 다만 “성분(원재료) 및 함량”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

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.

나. 글자크기

(1) 포장 표면적 50cm²이상 : 12 point(18급) 이상

(2) 포장 표면적 50cm²미만 : 8 point(12급) 이상

다. 색도 :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.

라. 기타

(1)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,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.

(2) 그물망 포장의 경우 꼬리표,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.

2. 포장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중 부득이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②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표시는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의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입가공품의 원료사용으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의 제조국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.

③ 시행규칙 제 24조 제 3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원료를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.

1. 국산원료가 있을 경우에는 “국산”과 “국산원료의 혼합비율”, 수입원료중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“생산국명 등”과 “수입원료의 혼합비율”로 표시

2. 국산원료가 없을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“생산국명”과 “그 혼합비율”, 로 표시

④ 시행규칙 제 24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“수입산”이라 표시할 수 있다.

1.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 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최

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이상 변경되었거나, 신제품의 경우에는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회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

2.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

제5조(시료 검정기관) ① 시행령 제 2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산물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· 지원

2. 축산물 :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

3. 임산물 : 산림청 임업연구원

4. 가공품 : 한국식품개발연구원

② 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다른 규정의 폐지) 농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(농림부고시)은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제3조 (경과조치) ① 이 요령 시행전 농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(농림부고시)에 의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외에 새로 추가된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2000. 12. 31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한다.

② 이 요령 시행전 농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(농림부고시)의 표시방법에 의하여 이미 제작된 포장지는 2000. 12. 31 까지 사용할 수 있다.